



구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66호 |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고 시

- 미추홀구 고시 제2026-80호 『송의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2
- 미추홀구 고시 제2026-8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6
- 미추홀구 고시 제2026-83호 미추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8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91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박경○) 11
- 미추홀구 공고 제2026-9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주식회사디○에스홀○○) 12
- 미추홀구 공고 제2026-92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서복○) 13
- 미추홀구 공고 제2026-936호 부동산중개사무소 휴업기간 초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4
- 미추홀구 공고 제2026-939호 빈집 안전조치 공시송달 공고 15

회 란

| 발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 편집: 미디어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 - 80호

『승 의 3 재 개 발 사 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0-49호(2010. 07. 0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18번지 일원 송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5. 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신청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송의3 재개발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가. 사업시행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18번지 일원
 - 나. 면 적: 32,881.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가. 시행자: 송의3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나. 대표자: 조합장 목영식
 - 다.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4,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80개월(변경 없음)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12년 6월 18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2026년 5월 27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붙임” 참조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m ²)	27,691.60	
건축면적(m ²)	3,930.3287	
연 면 적(m ²)	99,330.8906	
지하면적(m ²)	31,239.6313	
주차면적(m ²)	27,983.3641	
건 폐 율(%)	14.19	
용 적 률(%)	244.16	
높 이(m)	82.05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동·층·세대수	6개동, 29층, 736세대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 지정

정비 기반 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2,400m ²	공원	2,074m ²	송의3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 4,068,391,500
			도로	1,875.9m ²	송의3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 5,716,563,000

○ 변경

정비 기반 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3,480.25㎡	공원	2,074㎡	승의3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 4,068,391,500
			도로	1,875.9㎡	승의3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 5,716,563,000

10.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상기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변경의 사유 및 내용

가. 정비계획 변경(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5-213호)에 따라 변경 사항 반영(영구임대 → 공공임대, 사업시행구역 내용 일부 등)

나. 관리처분계획 변경 사항 반영(국·공유지 및 정비기반시설 관련 면적 변경 등)

다. 준공인가 전 도면 수정(외관·기능 개선 및 실제 시공 반영, 관련 법령 기준 반영, 교통영향평가 변경사항 반영, 주민공동이용시설 면적 변경 등)

라. 구역 내 다른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마.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 반영

바. 정비사업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총회 의결)

사.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서 상 오기, 누락 사항 기재(2020. 12. 31. 인가 이후 동의율 기재 등 누락)

12. 기타 관계도서: 게재생략(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또는 숭의3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처분통지서(청문참석)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5. 28. ~ 2026. 6. 12.(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4. 처분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8호
5. 공고대상 및 내역

기관명 (기관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 **** *** 주안 센터 (2-28177- 005**)	김*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번길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 지정취소	2026. 6. 18.(목) 10:00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송의보건지소 4층)

6. 공고사유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7. 문의사항

- 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기요양팀)
- 나. 전화번호 : 032)880-4583 / 팩스 032)880-4369
- 다. 전자우편 : leesj88@korea.kr

8. 유의사항

-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위 청문일에 청문장소를 방문하여 청문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문절차를 종료하며, 예정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83호

미추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53호(2025. 12. 8.)로 촉진계획 결정 및 촉진구역 지정 고시된 미추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9일

미 추 홀 구 청 장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259-16번지 일대
나. 면 적 : 68,384.3㎡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직책	성명	주소
1	위원장	주재득	주안동290-21
2	감사	정영복	주안동303-37, 주안동303-38
3	위원	김두현	주안동303-19
4	위원	김정현	주안동259-14대형홈션302호
5	위원	권철섭	주안동259-10동인하이츠빌402호
6	위원	박경숙	주안동289-12
7	위원	김하경	주안동311-34
8	위원	박동철	주안동259-13
9	위원	김원수	주안동257-22
10	위원	최정용	주안동259-41
11	위원	유향순	주안동289-10
12	위원	이종수	주안동307-42
13	위원	조민행	주안동399-2태양빌라 A동B02호
14	위원	강현일	주안동289-18
15	위원	박영자	주안동399-2태양빌라A동B01호
16	위원	우복동	주안동289-25
17	위원	이승현	주안동257-7영 꼬빌라B동501호
18	위원	이경자	주안동3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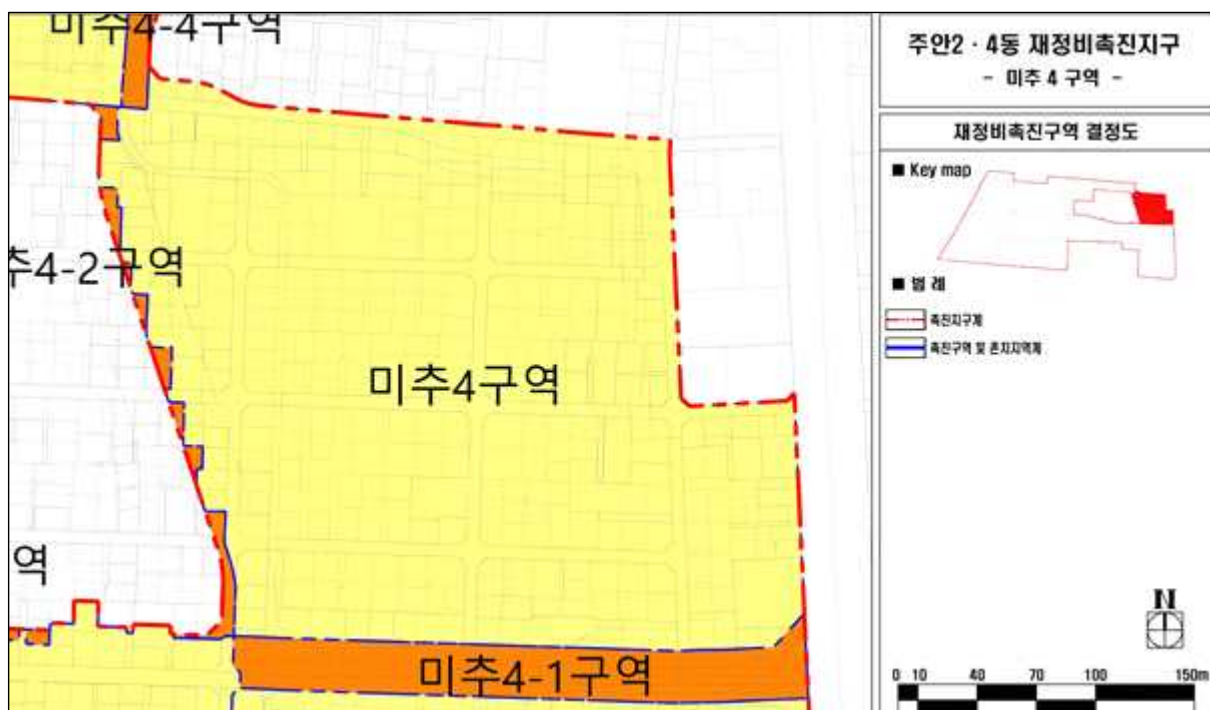
연번	직책	성명	주소
19	위원	김인수	주안동290-46, 주안동290-17
20	위원	송선호	주안동259-2
21	위원	장순이	주안동252-11
22	위원	서옥수	주안동259-9대흥프라임303호
23	위원	서옥자	주안동251-9
24	위원	이주월	주안동290-41, 주안동290-05
25	위원	노국현	주안동290-44, 주안동290-11
26	위원	이여향	주안동258-6
27	위원	이한복	주안동259-1남송빌리지 303호
28	위원	박민아	주안동258-4
29	위원	이순덕	주안동257-10
30	위원	하원일	주안동316-9
31	위원	김윤희	주안동399-1주연테크빌502호
32	위원	박순필	주안동399-1주연테크빌302호
33	위원	전혜원	주안동259-34삼성탑스빌401호
34	위원	정정해	주안동259-18
35	위원	이성한	주안동259-1남송빌리지403호
36	위원	모용택	주안동257-10
37	위원	이수경	주안동313-2원일빌라202호
38	위원	김삼두	주안동289-46, 주안동289-35
39	위원	권금녀	주안동252-4포인빌라303호
40	위원	장해생	주안동290-20주안빌라301호
41	위원	이인숙	주안동252-4포인빌라B02호
42	위원	어윤우	주안동290-13
43	위원	윤대원	주안동258-9
44	위원	고명희	주안동252-16
45	위원	박민정	주안동259-9대흥프라임101호
46	위원	이정구	주안동391-7
47	위원	여미자	주안동303-19주안센스빌302호
48	위원	강한선	주안동251-15
49	위원	이연옥	주안동259-3
50	위원	이명석	주안동289-7
51	위원	김순남	주안동399-60
52	위원	장인옥	주안동399-3
53	위원	김덕자	주안동258-20미성빌라502호

연번	직책	성명	주소
54	위원	정수원	주안동259-9대흥프라임402호
55	위원	주자연	주안동252-4포인빌라203호
56	위원	장선아	주안동313-2원일빌라102호
57	위원	조종찬	주안동289-29
58	위원	박수자	주안동303-22
59	위원	이웅철	주안동251-3
60	위원	김은혜	주안동258-24성안빌라202호
61	위원	이을용	주안동257-17
62	위원	정남성	주안동289-1
63	위원	차재순	주안동259-38
64	위원	이희용	주안동259-39

3. 토지등소유자의 수 : 587명

4.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자 : 2026년 5월 29일

5. 축진구역 결정도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918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및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미 추 홀 구 청 장

1. 처분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6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9.(15일간)
4. 공고방법 :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처분당사자			위반물건		과태료 사전 통지 금액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소	위치	위반내 용	
201*-미추홀구- 임대사업자-13*6	박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7*번길 1* 90*호(송의동, 더*팰리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종로1* 130*호 (송의동, 한마음아파트 *동)	임대차 계약 미신고	5,000,000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5*번길 * 80*호(주안동, 그*아트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5*번길 * 70*호(주안동, 그*아트빌)		

6. 안내사항

-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며,
- 나. 당사자는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은행(우체국,농협 포함)에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부과,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같은 법 제 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2-880-45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919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및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미 추 홀 구 청 장

1. 처분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6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9.(15일간)
4. 공고방법 :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처분당사자			위반물건		과태료 사전 통지 금액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소	위치	위반내 용	
202*-남동구-임 대사업자-5*	주식회사디 지에스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12* *층 1*호(구월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17*-* 20*호(도화동, 명성빌라)	임대차 계약 미신고	5,000,000원

6. 안내사항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
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며,

나. 당사자는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은행(우체국,농협 포함)에 기한 내 납부하
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채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
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같은 법 제 54조(고액·상
습채납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2-880-45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923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및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미 추 홀 구 청 장

1. 처분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6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9.(15일간)
4. 공고방법 :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처분당사자			위반물건		과태료 사전 통지 금액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소	위치	위반내 용	
201*-성남시-임 대사업자-1739*	서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9* 31*동 30*호(서현동, 효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8* 11*동 180*호(주안동, 주안더월*스테이트)	임대차 계약 미신고	5,000,000원

6. 안내사항

-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
 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으며,
- 나. 당사자는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은행(우체국,농협 포함)에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부과,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같은 법 제 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2-880-45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9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항 규정에 의거 휴업신고 후,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여 이에 따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28.

1. 공 고 기 간: 2026. 5. 28.~2026. 6. 11.(14일간)

2. 공 고 내 용

제 목	부동산중개사무소 휴업기간 초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 상 자	육0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봉로00길 00, 000호
중개사무소	을00공인중개사사무소
내 용	부동산중개사무소 휴업기간 초과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근 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3. 기 타 사 항

가. 공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032-880-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939 호

빈집 안전조치 공시송달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에 따라 주안동 849-151번지 소재 빈집에 대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28.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처분내용: 빈집 자진 안전조치 명령 및 직권 안전조치 통지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 처분원인: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4. 공고기간 및 공시송달 대상

가. 공고기간: 2026. 5. 28. ~ 2026. 6. 11.(14일간)

나. 공시송달 대상

소재지	소유자	대상	조치내용	현장사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236번길 26-10 (주안동 849-151번지)	확인불가	건축물	안전조치 (안전시설물 설치 등)	

5.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미추홀구 홈페이지
6. 지시 및 고지사항
 - 2026년 8월 10일까지 해당 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안전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추홀구청에서 직권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 032-880-44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